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공정 신고보도 관련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장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3항 등).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위법한 게시물의 삭제 조치에 대해 관할위원회<sup>1)</sup>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현행 “3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생략)                                                     |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br>-----<br>-----30일-----<br>-----<br>-----.                        |
| <신설>                                                                               | ④ 관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신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⑥ -----<br>-----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br>-----.                                 |

현행법(제29조)<sup>2)</sup>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본안 절차에 앞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행정기본법」<sup>3)</sup>은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그리고 행정청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현행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는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위원회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탁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저해<sup>4)</sup>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위법한 게시물의 삭제 조치에 대해 관할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기간에 부합하도록 현행 “3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구제의 실질적 보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위탁선거 또한 선거행정의 시의성과 신속성은 선거의 공정성과 더불어 해당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특히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절차에도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모든 사안에 일반 행정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개정안의 제안이유

특히, 현행법상 선거기간은 의무위탁선거<sup>5)</sup>의 경우 14일로 대통령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선거기간과 유사한바, 이처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심사까지 완료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임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한 정보가 삭제된 후보자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이의신청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이 이의신청 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역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336 |